일본의 통신감청 기간 및 연장에 관한 법제의 주요 내용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국가송무과

Ⅰ. 들어가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1] 이러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통신의 비밀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고 있으며,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본 전신전화주식회사에 관한 법률(NTT), 부정엑세스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조직화, 복잡화, 과학화에 대응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감청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감청법' 이라 한다)」[2]을 제정하여 통신감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율하게 되었다.

결국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과 통신의 비밀보호라는 기본권 보장간의 조화로운 접점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통신감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실체적 · 절차적 요건과 한계가 통신감청법의 핵심이 된다고 할 것이다.[3]

1)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法律(평성 11년 8월 18일 법률 제137호), 최종 개정년월일은 평성 19년 11월 30일 법률 제120호이다. 1999년 8월 18일에 공포되었으며,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3) 헌법 제21조 제2항의 통신의 비밀, 제31조의 적법절차, 제35조의 영장주의와의 관련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동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의 통신제한조치[4]와 관련한 일본의 통신 감청 기간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통신감청제도의 의의[5]

1. 통신감청제도

통신감청이란 조직적인 범죄 가운데, 특히 중대·흉악한 범죄의 수사를 위해 재판관이 발부하는 감청 영장에 의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피의자의 통신 가운데 범죄와 관련된 것을 감청하는 것을 말한다. 감청의 대상이 되는 통신은 전화(유·무선), 전자메일, 팩스, 그 외의 전기 통신 등이 해당이 된다.

2. 통신감청의 요건

통신 감청의 요건은 대상 범죄(약물범죄, 총기범죄, 조직적인 살인, 집단 밀항)의 고도의 혐의, 범죄와 관련된 통신이 행해진 혐의, 통신수단의 특정,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수사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3. 통신감청의 방법

전기 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전기 통신설비에 통신 감청용 기기를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설비 관리자 등의 입회 아래 실시한다.

4. 감청할 수 있는 통신

통신 감청이 가능한 통신은 감청 영장에 기재된 감청해야 할 통신, 감청 영장에 기재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일정한 중대한 범죄에 관련된 통신이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통신이 감청영장에 기재된 감청해야 할 통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의 통신에 대해서도 감청할 수 있다.

4) 우리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8조(긴급 통신제한조치) 등의 규정이 있다.

5) www.moj.go.jp/content/000009614.pdf 참조.제1장 총칙

Ⅲ.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의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통신 감청의 요건 및 절차
제3조 감청 영장
제4조 영장 청구의 절차
제5조 감청 영장의 발부
제6조 영장의 기재사항
제7조 감청기간의 연장
제8조 동일 사실에 관한 감청 영장의 발부
제9조 감청 영장의 제시
제10조 필요한 처분
제11조 통신 사업자 등의 협력 의무
제12조 입회
제13조 감청의 해당성 판단을 위한 감청
제14조 다른 범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한 통신의 감청
제15조 의사 등의 업무에 관한 통신 감청의 금지
제16조 상대방 전화번호 등의 탐지
제17조 감청 중단 및 종료시의 조치
제18조 감청의 종료
제3장 통신 감청의 기록 등
제19조 감청을 한 통신의 기록
제20조 기록매체의 봉인 등
제21조 감청 상황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등
제22조 감청 기록의 작성
제23조 통신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제24조 감청 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
제25조 감청 원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
제26조 불복제기
제27조 감청 원기록의 보관 기간
제4장 통신 비밀의 존중 등
제28조 관계자에 의한 통신 비밀의 존중 등
제29조 국회에의 보고 등
제30조 통신 비밀을 침해한 행위의 처벌 등
제5장 보칙
제31조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제32조 최고재판소 규칙

1. 통신 감청의 요건 및 절차

(1) 감청 영장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① 대상범죄가 범해졌다고 의심할 말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대상범죄가 수인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범죄 관련 통신이 행하여진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범인을 특정하거나 범행의 실행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재판관이 발행한 감청영장에 의하여 범죄와 관련된 통신수단에 대하여 감청을 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2) 영장 청구의 절차

감청 영장의 청구는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이 지방법원의 재판관에게 한다.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이 영장의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청구에 관련된 피의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같은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 영장의 청구나 발부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재판관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제4조).

(3) 감청 영장의 발부

재판관은 감청 영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감청 기간을 정하여 감청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청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5조).

(4) 영장의 기재사항

감청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죄명, 벌조, 감청할 통신, 통신수단, 감청 방법 및 장소, 감청 기간, 감청 조건, 유효 기간 및 기간 경과 후 감청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감청영장을 반환해야 하는 취지, 발부연원일, 그 외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피의자의 이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면 충분하다(제6조).

(5) 감청기간의 연장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의 재판관은 필요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청구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감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감청기간은 전체를 통틀어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영장에 연장 기간 및 이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7조).

(6) 동일 사실에 관한 감청 영장의 발부

재판관은 감청 영장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청구와 관련된 피의사실에 전에 발부된 감청영장의 피의사실과 동일한 것이 포함될 때에는, 동일한 통신 수단에 대해서는 다시 감청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제8조).

(7) 감청영장의 제시

감청을 실시할 경우 통신수단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감청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동일하다(제9조).

(8) 통신사업자등의 협력의무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통신사업자등에 대해서 감청에 있어 감청을 위한 기기의 접속 그 외의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신사업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제11조).

(9) 감청의 해당성 판단을 위한 감청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감청기간에 행해진 통신이며, 감청영장에 기재된 감청해야 할 통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경우에 감청대상 통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통신 감청을 행할 수 있다. 외국어 또는 암호 등을 이용한 통신으로 감청대상 통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감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하게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3조).

(10) 다른 범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한 통신의 감청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감청을 행하는 동안에 감청영장에 피의사실로서 기재되어 있는 범죄 이외의 범죄로서, 별표에 규정되거나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실행하거나 실행할 것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통신을 하였을 경우, 해당 통신의 감청을 할 수 있다(제14조).

(11) 의사 등의 업무에 관한 통신 감청의 금지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감청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간의 통신에 대해서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당해 업무에 관한 것이라 인정될 경우에는 감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

(12) 상대방 전화번호 등의 탐지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감청 동안에 행해진 통신에 대해서 해당 통신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통신 사업자 등은 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제16조).

(13) 감청 중단 및 종료시의 조치

감청영장의 기재에 따라 감청을 중단 또는 종료하여야 할 때에 통신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통신수단의 사용(통화)이 종료될 때까지 감청을 계속할 수 있다(제17조).

(14) 감청의 종료

감청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감청영장에 기재된 감청 기간 내라 하더라도 감청을 종료하여야 한다(제18조).

2. 통신 감청의 기록 등

(1) 감청을 한 통신의 기록

감청을 한 통신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녹음, 그 외의 적절한 방법에 의해 기록매체에 기록을

하여야 하며, 감청을 중단 또는 종료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기록매체에 대한 기록을 종료하여야 한다(제19조).

(2) 기록매체의 봉인 등

감청을 중단 또는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입회인에게 기록매체에 대한 봉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회인이 봉인을 한 기록매체는 지체 없이 감청영장을 발부한 재판관이 속해 있는 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0조).

(3) 감청 상황을 기록한 서면의 제출 등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감청의 종료 후 지체 없이 감청의 개시, 중단 및 종료 연월일시, 입회인의 성명 및 직업, 입회인의 진술, 감청 중 통화의 개시 및 종료의 연월일시, 제14조의 다른 범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한 통신의 경우에는 감청 근거 조항, 범죄의 죄명 및 벌조, 기록매체의 교환 연월일시, 그 외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감청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같다(제21조).

(4) 감청기록의 작성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감청을 실시 또는 종료하였을 경우 그때마다 감청을 한 통신의 내용을 형사소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감청 기록을 한 통 작성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5) 통신 당사자에 대한 통지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감청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해당 통신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시, 상대방의 성명, 감청 영장 발부 연월일, 감청 개시 및 종료 연월일, 감청한 통신 수단, 감청 영장에 기재된 죄명 및 벌조, 감청기록을 작성한 취지 등을 통신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청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판소의 재판관은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의 청구에 의해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및 제2항). 감청기록에 대한 위 통지를 받은 통신의 당사자는 감청 기록 중 해당 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청취, 열람, 복제 등을 할 수 있다(제24조).

한편 감청의 원기록을 보관하는 재판관은 감청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통신의 당사자가 감청 기록 중 해당 통신과 관련되는 부분을 청취 등을 통해 이의 정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감청의 원기록 중 해당 통신에 상당하는 부분을 청취, 열람,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그 외 감청 범죄 사실의 존부의 증명, 감청 기록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의 청구에 의해, 혹은 재판 및 피고인의 방어 등을 위해서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25조).

(6) 불복 제기

재판관이 한 통신의 감청에 관한 재판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재판관이 속하는 재판소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감청에 위법 등이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제26조).

(7) 감청 원기록의 보관기간

감청의 원기록은 제출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는 날이나, 감청 기록이나 복제 등을 증거로 하여 조사한 피고 사건, 감청에 관한 형사 사건의 종결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는 날 중 가장 긴 날까지 보관하도록 한다. 다만 원기록 보관 재판관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7조).

3. 통신 비밀의 존중 등

(1) 관계자에 의한 통신의 비밀 존중 등

검찰관, 검찰사무관, 사법경찰직원 및 변호인, 그 외 통신의 감청에 관여하여 감청 상황이나 감청한 통신의 내용을 직무상 취득한 자는 통신의 비밀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제28조).

(2) 국회에의 보고 등

정부는 매년 감청 영장의 청구 및 발부 건수, 그 청구 및 발부에 관련된 죄명, 감청 대상으로 한 통신수단의 종류, 감청 기간, 감청 동안의 통화 횟수, 영장기재 통신의 횟수 및 감청 사건에 관하여 체포한 인원수를 국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장이 없어진 후에 이러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제29조).

(3)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의 처벌 등

수사 또는 조사의 권한을 가지는 공무원이 그 수사 또는 조사의 직무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9조 제1항 또는 유선전기통신법 제40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조).

한편 통신의 감청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에 의한다(제31조). 또한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 외에 감청 영장의 발부, 감청 기간의 연장, 기록매체의 봉인 및 제출, 감청의 원기록의 보관과 그 외 취급, 감청 상황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통신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 기간의 연장, 재판소가 보관하는 감청기록의 청취, 열람, 복제의 작성 및 불복 신청에 관한 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제32조).

Ⅳ. 통신 감청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

1. 일본의 경우

일본의 통신 감청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5조 및 7조와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감청에 관한 규칙」[6] 제6조 및 제7조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통신 감청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감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전체 감청 기간은 전체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는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의 청구에 의해 지방법원의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감청 기간 연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연장을 요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연장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6조). 또한 재판관은 연장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기간 및 이유를 기재한 감청영장을 재판소 서기관을 통해 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재판소 서기관은 감청영장을 청구자에게 발부하는 경우에는 감청영장의 발부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 기간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통신제한조치)에 관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한 경우, 긴급한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감청 기간 및 연장 기간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를 위하여 감청을 실시하는 경우 감청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2월의 범위 안에서 감청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7항). 한편 국가 안보를 위하여 통신 감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4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내에서 감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을 할 수 있으며, 감청 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청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와 연장할 기간을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조).

V. 결어

이상으로 일본의 통신 감청제도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기간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본의 경우 최대 30일로 우리나라의 2개월에 비해

6) 평성 12년 3월 15일 최고재판소 규칙 제6호, 개정 평성 12년 2월 15일 최고재판소 규칙 제15호

1개월이나 짧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간도 10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 절차에 의하여 10일씩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7)]

최근 흉악 범죄의 증가에 따른 신속한 범죄 수사의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청이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통신의 비밀 보호라는 기본권과 범죄 수사라는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어떻게 법제에 반영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로 합리적인 대안 및 절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 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7) 한편 동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일본의 「2009년 통신 감청 실태에 관한 국회 보고」에 따르면 약물밀매 등으로 인한 각성제 단속법, 총도법, 마약특례법 위반 등으로 총 23회에 걸쳐 통신 감청이 이루어졌으며, 감청기간으로 보면 1일간 1회, 2일간 1회, 3일간 1회, 4일간 1회, 5일간 3회, 7일간 1회, 8일간 1회, 9일간 1회, 10일간 4회, 15일간 1회, 18일간 1회, 19일간 3회, 24일간 1회, 29일간 1회, 30일간 2회로 감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감청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한 평성 21년 감청에 관한 국회 보고 자료 참조. 법무성, 후생 노동성, 경찰성에서 2010년 2월 5일 동시 발표). 우리나라에 비해 감청 횟수가 적고, 기간도 짧은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통계는 www.moj.go.jp/content/000009614.pdf 참조.